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51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 박지혜·이기헌·김성환

임미애 · 황명선 · 위성곤

이건태ㆍ허 영ㆍ이소영

김정호 · 조인철 · 서영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관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에너지수급·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계획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사용계획 검토시 신·재생에너지사용량이 총에너지사용량의 0.4% 이상인 경우 에너지이용계획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해주고 있어,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이용의 촉진방안이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설치 전에 수립·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 함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에너지의 효율적 인 이용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에는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공간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

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① -----「사업임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 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지개발사업"이라 한다)-----"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 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 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 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 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 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 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 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에너

지사용계획에는 공장건축물의 지붕・옥상,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공간에 대한 태양광발전설비(「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 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 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